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개정 2024. 4. 9.>

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4일
신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
등록 신청사항	① 화학물질명			
	② 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 번호)			
	③ 분자식·구조식		④ 연간제조(수입) 예정량(톤)	
	⑤ 등록형태	[] 0.1톤 이상 1톤 미만 [] 1톤 이상 10톤 미만 [] 10톤 이상 100톤 미만 []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[] 1,000톤 이상 [] 고분자화합물 [] 나노물질 [] 현장분리중간체 [] 수송분리중간체 []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[]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화학물질 ([] 0.01톤 미만 [] 0.01톤 이상 0.1톤 미만 [] 0.1톤 이상 1톤 미만)		
	⑥ 용도분류체계			
	⑦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			
	⑧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			
	⑨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			
	⑩ 상품 내 함량(%)			

수입자 (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⑪ 상호(명칭)	⑫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⑬ 대표자	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⑮ 수입국

⑯ 수탁자 (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 2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란~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.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.
- ⑥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.
-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.
-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, ⑩란의 상품 내 함량(%)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.
- ⑪란~⑮란은 신청인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 다만,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